

출판유통심의위원회

- ◆ 제 목 : 전자책 분야의 도서정가제 준수 방법 안내
- ◆ 수 신 : 전자책 발행 출판사 및 유통사 대표
- ◆ 발 신 : 출판유통심의위원회
- ◆ 문서번호 : 2019-001
- ◆ 발송일자 : 2019.2.11.(월)

1.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출판유통심의위원회(이하 '위원회')는 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 명시된 '간행물의 정가 표시 및 판매', '간행물의 유통질서와 관련된 사항'을 심의·의결하는 등 건전한 출판유통질서 유지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는 기구입니다.

3. 최근 위원회에서는 전자책 유통과정에서 도서의 상세정보를 표시하지 않고, 결제수단을 통화단위가 아니라 캐쉬, 쿠키 등 임의의 단위로 표시하여 소비자에게 정보를 명확하게 제공하지 않는 등으로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22조(간행물의 정가 표시 및 판매) 제3항을 위반하는 사례와 결제수단을 충전하는 과정에서 과다하게 보너스를 제공하는 등으로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22조(간행물의 정가 표시 및 판매)제4항과 제5항을 위반하는 사례가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문제점을 파악하였습니다.

4. 이에 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출판법 준수 방법을 알려드리오니, 전자책 발행 출판사 및 유통사에서는 발행하는 도서 및 판매 사이트를 점검하여 법에 정해진 사항을 명확하게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, 향후 모니터링을 할 때에는 범위반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.

- 다 음 -

- 주요내용 및 근거 :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22조(간행물의 정가 표시 및 판매)
 - 전자출판물의 경우에는 출판사가 정가를 서지정보에 명기하고 전자출판물을 판매하는 자는 출판사가 서지정보에 명기한 정가를 구매자가 식별할 수 있도록 판매사이트에 표시해야 함 (* 출판법 제22조 제3항 근거, 위반 시 과태료 100만원 부과)
 - 도서를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할 때 정가대로 판매하되, 독서진흥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정가의 15% 이내에서 가격할인과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할 수 있음 (* 단, 가격할인은 10% 이내로 제한, 출판법 제22조 제4항, 제5항 근거, 위반 시 과태료 300만원 부과)

□ 준수방법

- 출판사 : 정가를 서지정보에 명기
- 유통사 : 정가를 구매자가 식별할 수 있도록 판매사이트에 표시 / '원'단위 표시 / 결제수단 충전 시 보너스는 할인범위 이내에서 제공 가능

□ 유의사항

- 출판물불법유통신고센터에서는 정기적인 모니터링 실시하여, 적발 시 해당기관에 신고조치 할 예정임

<적용 예시>

판매사이트 표시 사례	법 제22조제2항 위반 여부
전자책 정 가 : 〇〇원 전자책 판매가 : 〇〇원	법 위반 아님
전자책 가격 : 〇〇원	가격이 정가인지 판매가인지 식별하기 어려우므로 도서정가제 표시방법 위반
종이책 정 가 : 〇〇원 전자책 판매가 : 〇〇원	전자책 정가를 식별하기 어려우므로 도서정가제 표시방법 위반
종이책 정 가 : 〇〇원 전자책 정 가 : 〇〇원 전자책 판매가 : 〇〇원	전자책 정가를 식별할 수 있으므로 법 위반 아님

출판유통심의위원회

